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가합382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나203284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가합38256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근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택준

변 론 종 결 2022. 6. 24.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4.에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194,100,000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3. C 및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2015년제124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5년 12월 22일 금 일십삼억삼천팔백만(₩1,338,000,000)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5년 12월 30일에 금 삼억삼천팔백만원(₩338,000,000)정을 변제하고, 2016년 4월 30일에 금 일십억원(₩1,000,000,000)정을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년 6%로 하며,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관계자의 표시

관계(촉탁인) 채권자

성명(명칭) A 주식회사 대표이사 F

관계(촉탁인) 채무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

관계(촉탁인) 연대보증인

성명(명칭) C

나. 원고는 2016. 4. 27.부터 2016. 12. 30.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 및 C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일부 변제받았고, 마지막으로 변제받은 날인 2016. 12. 30.을 기준으로 남은 원금은 160,474,101원이었다.

다. C는 2020. 12. 24.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21. 4. 8. 본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회사인 사실, 피보전채권 중 3억 3,800만원의 변제기는 2015. 12. 30.이고, 10억 원의 변제기는 2016. 4. 30.인 사실, 원고가 주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C로부터 마지막으로 변제받은 날이 2016. 12. 30.인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2021. 12. 30.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고, C의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1. 7. 2. C를 채무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제3채무자로, 청구채권금액 206,690,285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117632호)을 받았으므로, C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3) C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인 이 사건 회사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C의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게 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김병휘, 판사 정한영

별지